

『일재 변경봉 문집』에 나타난 18~19세기의 제주사회 성격에 관한 일고 —유교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김새미오*

차 례

1. 서론
2. 일재 변경봉의 생애
3. 무속에서 유교로
4. 청금안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
5. 결론

1. 서론

邊景鵬(1754~1824)은 제주도 대정읍 신도리 출신으로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반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정조대에 출사하여, 奉常寺·副奉事·典籍·直講 등을 역임하였고, 후에 司憲府 掌令까지 지냈다. 또한 변경봉은 외직으로 大靜縣監 및 萬頃縣令을 지냈다.

변경봉에 대해 『輿地圖書』에서는 대정군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하였다.¹⁾ 金錫翼은 탐라의 人文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근세의 인물로 변경봉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제주대학교 강사. kimsaemio@hanmail.net

1) 『輿地圖書』補遺篇(全羅道)大靜郡古誌 人物: 金衡重文科官至典籍, 金構文科官至

을 거론하였고, 특히 만경현령 재직 시에 농사에 대해 정통했던 그의 모습을 서술하였다.²⁾

그의 문집으로 『通政大夫 司憲府 掌令 邊景鵬 文集』이 문중에 전하고 있었다. 최근에 이를 발굴하여 번역작업을 실시되어 그 면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문집은 원래 250장 500여 면의 비교적 방대한 분량이었지만, 6·25사변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소실되고 말았다. 현재 전하는 것은 그 잔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집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성리학적인 내용과 제주도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제주도 역사를 기록한 『耽羅事蹟』이 눈에 띈다.

번역자들이 문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心齋文集』(권4)가 다시 발견이 되었다. 『心齋文集』(권4)은 상소문, 시, 잡록, 제문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상소문은 경상도 유생 曹文構의 것과 충청도 유생 許復의 것이 실려 있다. 시는 변경봉이 장령으로 재직할 때 서울에서 환갑을 맞는데, 이에 주변 문인들이 지은 시이다. 이때 시를 지은 사람은 朴命燮, 李集斗, 邊重裕, 邊景俊, 朴在豊, 邊景祐, 李朝鉉, 鄭基弘, 呂善執, 趙琮鎭이다. 이들 중에서 邊景祐와 邊景俊은 제주 출신이다. 잡록에서는 중국과 조선의 여러 이야기를 기록하였다.³⁾

그의 문집은 과거 합격자가 많지 않은 제주지역의 문인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제주도에 과거를 합격한 인물이 본토에서

禮曹佐郎, 金命燮年八十一登文科擢戶曹參判, 邊景鵬文科官至掌令, 吳榮寬武科官至碧沙察訪, 烈女梁氏, 任道寬妻其夫有疾至誠救病, 夫死之日, 忽不知所之家人求之則已縊死矣, 事聞旌其閭, 金氏姜應周妻, 其夫死誓以殉而遍有姑姪忍痛護, 及其姑米也, 竭誠送路既殯, 自裁死事, 聞旌其閭, 金氏金昌銀妻, 其夫病重呼泣願代及其死以瘞以喪帶自縊死, 事申旌閭.

2) 金錫翼, 『心齋集』·『耽羅誌錄』, 289쪽, 『心齋集』·『耽羅人物攷』 변경봉 조. (416쪽)

3) 허남춘 외, 『변경봉문집』, 탐라문화총서 24, 보고사, 2010.

번역된 『변경봉문집』과의 구별을 위해 추후에 발견된 문집은 『心齋文集』(권4)로 쓰도록 하겠다.

문집은 변경봉의 후손인 변동휘 님이 소장하고 계셨다. 본 연구를 위해 문집은 물론 다양한 자료를 알려 주셨고, 이에 여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그의 문집은 대체로 조선시대 유학자의 면모가 강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제주도 사람으로서 제주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변경봉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고, 문집의 내용을 토대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의 제주도 사회의 성격에 대해 접근하도록 하겠다. 한 사람의 기록으로 제주도 전체를 통괄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당시 제주사회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일재 변경봉의 생애

일재 변경봉은 1756년에 제주도 대정읍 신도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字는 仲學이며, 一齋는 그의 호이다. 그의 본관은 原州이다. 먼저 그의 집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⁴⁾

변경봉의 할아버지는 邊是海(1686~1761)이다. 변시해는 외가 쪽의 奪宗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것으로 面訓長으로 추대 받았다. 또한 그는 대정향교의 齋長으로 있을 때 齋任이었던 李仁時와 함께 聖廟와 齋室에 울타리를 쌓았으며, 대정향교 齋任시절에는 齋長인 金汝鍵과 防營에 글을 올려 花園田을 계획하고, 해마다 세금을 거두어 소금과 장 값을 마련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였다. 그의 종조였던 邊是重은 제주향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⁵⁾

변경봉의 아버지 邊聖休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한 것을 아니지만, 발을 일구는 틈틈이 공부를 하였고, 面社長까지 지냈다. 변경봉은 아버지와 교

4) 변경봉 집안의 내력과 그의 생애는 『邊景鵬文集』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문집 내의 것은 특별히 주석하지 않는다.

5) 오송희, 朝鮮後期 濟州鄉校 運營 實態,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유향던 사람으로 鄕長 李殷成·鄕長 姜啓重·訓長 金命獻·鄕長 金安厚를 언급했는데, 이들은 모두 당시 제주에서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다. 金命獻은 그의 아버지에게 지어준 輓詩에서 “가정에서 이어진 교육 근원이 있고, 巖穴에 구슬을 숨겨도 덕이 있어 이웃이 되었네.”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 그의 집안에 학문적 풍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변경봉은 아버지가 풍수에 대해 일가견이 있었다고 기억하였다. 제주도 전설에서는 변경봉의 아버지를 다소 무지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⁶⁾ 전설의 이면에는 당시 사람들이 그의 집안에 대한 부러움 등이 함축적으로 녹아 있다고 생각된다.

변경봉은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다. 그는 중문지역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적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한다. 변경봉은 10살 이전에는 아버지에게 『친자문』·『사략』 등을 익혔고, 11살 때부터 旌義訓長으로 있던 金命獻이 체직되었을 때 그에게 배운다. 후에 김명현이 정의현으로 돌아갔지만, 변경봉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따라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변경봉은 후에 다시 김명현을 찾아가 『通鑑節要』·『詩經』·『書經』·『唐音』 등을 배웠다. 이때부터 변경봉은 제술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1774년 겨울에 鳥科가 설치되었을 때, 변경봉은 과장에서 賦를 지어, 寫手에게 쓰게 하였는데, 옆에서 친구가 배껴 쓰는 것을 보고 시험지를 찢고 나왔다. 이런 그를 두고 옆에서는 미친 짓이라며 비웃었는데, 이때가 그의 나이 스물이었다.⁷⁾ 고향으로 돌아와서 변경봉은 천연두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아버지의 정성으로 살아난다.

변경봉은 21세에 靑笠서원으로 옮겨 거처하였다. 이때 목사 黃最彦이 日課를 장려했는데, 변경봉은 시로 세 차례 장원을 하였고, 이에 靑笠서원은 學誼을 상으로 받았다. 1779년 10월 曷叔 梁國樞와 함께 향시를 통과했고,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을 왕복하였다. 그렇지만 별 성과 없이

6)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100쪽, 「배질러 벤 당장」.

7) 『변경봉문집』에는 18세로 되어 있다. 생애를 재구성하면서 나이가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세로 정정하였다.

다음해 8월에 제주로 돌아왔다.

1780년 여름, 변경봉은 향교 掌議 직책을 수행하였고, 다음 해 鳥科에서는 낙방하였다. 1782년 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슬픔을 겪었고, 그 해 겨울에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당했다. 1790년에 제주목으로부터 특별히 厘正都監이 정해졌고, 厘正이 완성되었을 때 儒領의 천거에 들어가서 향교의 훈장이 되었다. 이때가 그의 나이 36세였고, 훈장으로 4년을 지냈다.

이러던 차 1794년에 巡撫御使 沈樂洙가 내도하여 鳥科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변경봉은 ‘觀於海者難爲水’라는 論題로 과거에 합격하였다. 처음에는 吳德成이 합격했지만, 정조가 만족하지 못하여 합격자를 변경봉으로 다시 뽑았다. 이 때 치른 鳥科에서 변경봉을 비롯하여, 夫宗仁·高鳴鶴·洪達勛·李台祥·鄭泰彦·金命獻이 같이 합격했다. 이들은 모두 『耽羅賓興錄』⁸⁾에 이름이 실려 전하고 있다. 『탐라빈흥록』은 지역인재를 뽑고 기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⁹⁾

다음 해인 1795년에 변경봉은 注書로 임명되었다. 그가 이렇게 빨리 임명된 것은 제주 도과에서 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정조의 배려였다.¹⁰⁾ 1794년과 1795년에 제주에서는 거둑 흉년이 있었다. 이때 정조는 변경봉을 불러 보고 민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물었고, 진휼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¹¹⁾ 이 사건은 1794년 음력 7·8월 곡식이 익을 때 갑작스럽게 소금비가 날려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가 있었던 기상이변이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은 수확이 없어 먹을 것이 없었고,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8) 『조선왕조실록』 정조 18(1794)년 4월 21일 : ○濟州御史沈樂洙, 試取儒生收券上送, 親臨科次, 論居首大靜幼學邊景鵬·策居首旌義幼學夫宗仁·詩居首旌義幼學高鳴鶴·賦居首濟州幼學洪達勛·銘居首濟州幼學李台祥·頌居首濟州幼學鄭泰彦, 并直赴殿試, 策之次大靜幼學金命獻, 以八十一歲, 特賜第, 命依嶠南關東例, 該載事實及人格諸作, 刊印以頒, 名曰『耽羅賓興錄』.

9)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10) 『日省錄』 정조19년 3월 22일命新榜安衡稷單付兪知耽羅臣李台祥等先付注書 : (전략)又教曰今榜中濟州文臣李台祥·洪達勳·邊景鵬·旌義文臣高鳴鶴·夫宗仁俱是遠人, 先付注書皆登筵然後, 次差代事分付.

11) 『弘齋全書』 168권. 『日得錄』 8. 『政事』 3.

끓어죽는 사람이 속출하자 정조는 급히 구휼미를 보냈는데, 구휼미를 실은 배의 일부가 바다에 침몰하는 바람에 곤궁한 상황이 지속되었다.¹²⁾ 이에 정조는 변경봉에게 대책을 마련하여 신하들에게 알리라고 특별히 지시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¹³⁾

정조20(1796)년 변경봉은 孝陵別檢으로 임명되었다.¹⁴⁾ 변경봉은 지난해 재해 때 제주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것을 생각하여 정조에게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간청하였다. 하지만, 변경봉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¹⁵⁾ 정조 20(1796)년 음력 8월25일까지는 효릉별검으로 있었던 기록이 보인다.¹⁶⁾

12) 『邊景鵬文集』 「甲寅乙卯年慘時說」.

13) 『日省錄』 정조 19(1795)년 10월 15일 : 召見諸承旨及藥房提調李時秀濟州文官邊景鵬于誠正閣 : 諸承旨持公事入侍藥院講診也. ○予謂時秀曰昨以濟州事有所判下於草記者, 雜果卽爲傳示於有相乎? 時秀曰與右相往復卽行會該道伯處以爲預先區劃之地矣. 予謂景鵬曰濟州秋事之失稔比昨年何如云耶? 景鵬曰猶可有取種者, 此似勝於前年矣. 予曰昨年相府之慘, 雖曰有司之不善調救而莫非朝廷之責也. 每一念及予心如何古人所謂若已推之者, 猶屬敬後語, 明春又或有一民之顯瘡, 則予雖一日一飯, 亦豈忍下咽乎? 仍教曰爾是未州人, 如有可採之策, 隨卽往言于齋堂諸臣.

14) 『日省錄』 정조20(1796)년 1월6일 : 有政吏曹判書沈煥之進 : 以李益運爲史曹參判·李勉兢爲禮曹參議·邊景鵬爲孝陵別檢·夫宗仁爲寧陵別檢·鶴林君楫爲都總管·李祖源爲副總管因寧陵別檢望簡教以近陵別檢中相換.

15) 『日省錄』 정조20(1796)년 : 命駐羅島民出陸事, 依該牧狀辭施行 : 該牧使狀啓以爲因奉常寺副奉事邊景鵬所稟, 許令島民出陸事, 有令有司堂上行會該牧從便措處之命矣. 島民之許通津路, 竟出我聖上, 軫恤窮命, 毋或阻飢之至, 意政不量度, 便宜思所以一分利民之方, 而第伏念時常隆冬路隔重溟, 其所舉行, 亦必十分審慎然後, 可無後悔. 而見今老弱疲瘠貧苦難保之類, 皆已付賑賴以延活, 且職在幕政, 既不能使斯民, 安堵無飢, 又從而涉險海, 散而之四, 實所矜憫, 而假使出陸之後, 得免飢寒, 勝於在島, 許多鶉鷄之徒, 遠塗疇運之際, 必多凍餒之患, 未見就食之效, 或至顛溝之境, 則實非所以仰體如傷之德意, 此輩則決不當許出, 若其年少壯健, 可以儲債者, 姑令弛禁, 開其生路, 似無所不可, 而當此船路阻絕之時, 徒致釋騷, 利涉無期, 則毋寧稍待春暖, 徐徐許出之爲穩, 便今方, 以此意曉諭坊曲, 使之隨所願, 次次出送, 而出陸, 形止修成, 冊報于備邊司計料教, 以事勢似然, 依狀辭施行, 而深軫兩便之方, 莫致後悔之歎事回諭.

16) 『日省錄』 정조 20(1796)년 8월 25일 (음) : 命齊陵令沈景文等 減仕 : 전략 … 泰陵直長孟賢大, 孝陵別檢邊景鵬, 康陵參奉南復來, 崇陵別檢趙恒存, 俱以有頭處, 枚報禮曹畿營或戶曹, 雖與初不論報有異, 謂以物力之不敷, 未免略略修改以致旋即有頭, 亦不更報京司, 以致執頭, 亦爲減仕三十日. 후략.

변경봉은 효릉별검을 지낸 후에 昌樂察訪으로 임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변경봉은 정조 22(1798)년 무오년에 창락찰방에서 쫓겨난다. 변경봉이 창락찰방에서 쫓겨난 것은 전라감사 李得臣의 장계에서 시작된다. 이 득신은 당시 제주 목사였던 曹命楫의 보고를 통해 상소를 올린다. 그 내용은 창락찰방 변경봉이 정의현에 유배와 있던 尹範中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을 꾸몄다는 것이었다.¹⁷⁾ 윤범중은 鄭厚謙 옥사와 관련하여 죄를 받고, 아버지인 尹泰淵과 함께 蝸島로 유배되었다가 제주 정의현에 유배된 인물이었다.¹⁸⁾ 변경봉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지만,¹⁹⁾ 유배왔던 사람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결국 창락찰방에서 파직되어 제주로 쫓겨났다.²⁰⁾ 제주로 온 후 변경봉은 당시 관리들의 집요한 통제를 받았다. 심지어 변경봉을 감시하던 병사들이 농사지을 시간이 없다고 할 정도였고, 그의 친척들이나 친구들 역시 가까이 하기 힘들었다.

그런 몇 년간의 생활 후에 정조24(1800)년에 그의 죄에 대한 탕척이 건의되었다.²¹⁾ 이에 대해 몇몇 신하들이 반대와 상소가 있었지만, 결국 변경봉은 奪告身秩되어 사면되었다.²²⁾

17) 「日省錄」 정조 22(1798)년 3월 15일 : 全羅監司 李得臣 以 昌樂察訪 邊景鵬 罷黜馳啓 : 該監司狀啓 以爲卽接濟州牧使曹命楫謄報 去十二月二十九日 大靜縣各司上納領去 色吏李慶恒 自京回來時 所持卜物中 禾紬綿絀織羽絀細北布細木等 封裹之上書 以邊察訪家所傳云. 邊察訪 卽今昌樂察訪 邊景鵬也. 初無昌樂書 只有梁奉事一張書 而梁奉事 乃邊慶鵬之留京時 食主人. 外此餘火爐瀉江丸藥等物 亦爲不些 而此則曰本官所納上項 諸種俱是島中稀貴者 有物無書 極甚可疑 別遣可信人 追蹤密探 則皆是大靜罪人範中處所去者 聞甚驚駭...중략...邊景鵬, 雖是窮島賤品, 幸捷一科, 濫通朝籍, 則宜加謹慎之自別, 而反爲範中之所使, 寄食於二才, 相通於其間, 綢繆和應若是狼藉, 此不嚴處島民效頌之習, 無以懲戢. 其子軾書札之胎封, 船卜之傳通, 極涉巧惡. 至於李慶恒之京鄉札貨, 恣意相傳, 金泰謙之受答隱匿, 不卽發告, 亦極痛惡. 竝嚴囚, 各別重繩計料.

18) 「日省錄」 1776년 3월 26일조. 1776년 4월 7일조. 1777년 9월 27일조.

19) 「邊景鵬文集」·「戊午放逐時顯末」.

20) 「日省錄」 정조 22(1798)년 03-27(음) : 金吾 諸堂聯疏請罪人 邊景鵬, 窮訊得情命, 景鵬, 卽其地放逐.

21) 「日省錄」 정조 24년 1800-02-02(음) 判下 金吾 赦單○放逐鄉里罪人放秩前縣監黃道源教以放秩仍秩依此施行, 邊景鵬咸昌郁, 不足責并蕩漉, 簡教以并蕩漉.

22) 「日省錄」 정조 24(1800)년-06-01(음) 點下 吏兵 批歲抄: 전략 察訪邊景鵬 鞫廳罪

1800년 정조가 승하하자 변경봉은 바로 상경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 목사였던 鄭觀輝가 그의 출입을 막았고, 이어 부임한 목사 李延弼역시 예전의 조치를 따른다고 하여 변경봉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1803년 이연필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는 초료를 받고 본토를 밟게 되었다.

1804년 여름 변경봉은 복직하였고, 그해 겨울에 典籍이 되었다. 그의 문집에 1806년 봄에 凌官에 제수되었다고 했는데, 齊陵승이었던 기록이 있다.²³⁾

1808년 5월에 延曙察訪에 제수되었다.²⁴⁾ 이 시기 경기지역 암행어사의 별단에는, 변경봉이 '별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조정에 보고하고 있다.²⁵⁾ 1809년 봄 변경봉은 휴가를 받고 고향을 왕래하였다. 그해 10월 변경봉은 5개조항의 시무를 순조에게 올렸고, 순조는 이를 묘당에서 채택하여 실시하게 하였다.²⁶⁾ 1810년에 변경봉은 대정현감이 되었고,²⁷⁾

人成德雨減一等 報告身秩.

『朝鮮王朝實錄』 정조24(1800)년, 2월 3일 : ○承旨徐有聞、趙弘鎮上聯名疏曰: “國有大慶, 惠澤旁流, 肆赦之典, 宜其曠蕩. 而其中如金相福, 李昌俊, 李克生, 盧聖中之負犯何如, 關係何如, 而或爰周其姓名, 或蕩滌而減等, 有若尋常罪籍之遇赦蒙宥者然? 國之所以維持者, 實在於明義理嚴隄防六箇字, 而此等罪人, 亦入赦典, 則義理無地可伸, 隄防從此潰決, 其將國不得爲國, 人不得爲人, 以我殿下嚴懲討重名義之苦心, 盛德, 何爲此萬萬遺中之舉也? 至若申光復、朱炯魯、玄杞、邊景鵬之類, 亦不可以身故與鄙瑣, 無足貴, 混置肆赦之中. 乞寢或命, 以存大防.”

『朝鮮王朝實錄』 정조 24(1800)년 2월 3일 ○判下赦單, 金相福罪名爰周, 李昌俊、盧聖中、申光復、朱炯魯、邊景鵬蕩滌, 李克生、李萬軾、趙鎮明、李承薰減一等, 玄杞職牒還給.

23) 『日省錄』 순조 7년 1807-08-16(음) : 開城留守洪義謨, 以齊凌, 曲牆修改形止馳啓. : 狀啓以爲本月十五日行齊陵秋夕祭兼告由祭後曲牆修改當日長時如役, 而臣躬自監董, 又狀啓以爲齊陵曲牆修改始役形止朝已馳啓, 而臣與本陵令邊景鵬, 地方官豐德府使張鉉宅, 眼同董範, 自午方地臺石一併整排後曲牆二十三尺, 依舊改築, 當日酉時畢役.

24) 『日省錄』 순조 8년 1808-05-03(음) 有政, 吏曹判書南公轍進. : 以李珩爲副校理·韓用鐸爲知經筵·李潤謙爲永興府使·申義權爲草溪郡守·洪秉直爲開城經歷·邊景鵬爲延曙察訪.

25) 『日省錄』 순조 8년 1808-12-17(음) 京畿陪行御史洪儀泳, 進書啓別單. : 延曙察訪邊景鵬, 供職既勤, 他無可論.

26) 『朝鮮王朝實錄』 순조 9년 10월 24일 : 答延曙察訪邊景鵬疏曰, 省疏具悉, 諸條所陳, 切實, 令廟堂採施, 俾有實效之地.

『日省錄』 순조 9년 1809-10-24(음) 延曙察訪邊景鵬, 疏陳五條時務賜批.

27) 『日省錄』 순조 10년 1810-12-27(음) 都政下批, 吏曹判書朴宗慶·參判李存秀·參議

1816년 6월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²⁸⁾ 대정현감과 장령 사이의 기간 동안 그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순조 14(1814)년 梁濟海 사건을 계기로 찰리사로 왔던 李在秀의 치계에 '진현감 변경봉'이라고 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 다른 직책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²⁹⁾ 또한 변경봉은 장령으로 있던 1816년에 서울에서 환갑을 맞았는데, 그 때 여러 사람들과 화창한 시가 문집에 전한다.³⁰⁾

1818년 6월에 변경봉은 만경현령이 되었다.³¹⁾ 순조 19년 전라감사 朴宗薰의 틈에서는 변경봉에 대해 농사를 부지런히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³²⁾ 변경봉은 특히 농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예기』 초록의 경우도 「월령」편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제반 사항은 변경봉 자신이 농사에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1820년에 변경봉은 만경현령에서 파직되었다. 파직된 이유는 환곡상의 행정처리 문제 때문이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회의를 거쳐 그를 獻官에 임명한다.³³⁾ 이후 역사 기록에서 변경봉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문집에는 1821년 목사 韓象默에게 올린 제문³⁴⁾이 남아있다. 이로 볼 때 변경봉은 생애 말년을 제주도에서 보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변경봉은 1824년 향년 68세로 생을 마쳤고, 고향인 신도리에 그의 무덤이 있다.

그의 삶을 평가하자면 제주도의 한 양반이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생활을 했던, 전형적인 입신양명적인 삶이 녹아있다. 이는 당시 유교사상을 가

宋冕載·兵曹判書李勉旣 進：邊景鵬爲大靜縣監.

28) 『日省錄』 순조 16(1816)년-06-20(음)：有政. 吏曹判書朴宗慶·兵曹判書朴崙壽 進：以宋翼淵爲司諫, 邊景鵬爲掌令. 후략.

29) 『日省錄』 순조 14년1814-04-08(음)：濟州察理使李在秀, 以本島民邑弊瘼諸條馳啓.

30) 『一齋文集』(권4) 39~46쪽.

31) 『日省錄』 순조 18년 1818-06-25(음)：都政下批. 吏曹判書沈象奎·參判宋冕載·參議趙貞喆·兵曹判書金履陽·參知 朴孝成, 進：전략 邊景鵬爲萬頃縣令 후략.

32) 『日省錄』 순조 19년1819-06-18(음)：開圻 湖南 嚴最：全羅監司朴宗薰啓本, 益山郡守尹五榮, 事多率爾勉在精核, 萬頃縣令邊景鵬, 勗哉束濕, 勤於課農. 후략.

33) 『日省錄』 순조 21년1821-01-07(음)：點下. 吏兵批別歲抄：(전략) 邊景鵬減一等, 獻官.

34) 『一齋文集』(권4). 52쪽.

졌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보자면 이러한 전형성마저도 매우 독특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3. 무속에서 유교로

제주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속이 번성한 곳이다. 지금은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교를 이념으로 했던 조선에서 무속은 늘 '異端' 또는 '怪力亂神'이라는 명목으로 배척받았다. 그런 배척의 이면에는 조선사회가 점차 유교화 되어가는 양상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의 생애에서도 밝혔듯이 변경봉은 관리까지 지낸 유교지식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면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먼저 문집에서 유교적 성격의 글을 살펴보겠다.

변경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은 주자이다. 그의 저술에서 『朱子格物致知辨』·『朱子語類』·『禮記』·『職方氏』·『晦庵集』·『朱子の書冊』·『大學或問』 등은 성리학에 관계된 것이다. 이 당시 주자 존숭은 조선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제주도인 경우 사서삼경을 제외한 주자서적이 이 시기에 개인 문집 내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변경봉은 주자의 생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는 등³⁵⁾ 주자에 대한 그의 관심은 매우 남다르다. 변경봉의 이런 관심은 정조가 주자서적을 집대성하려 했던 점과 일치하는 바이다. 특히 변경봉은 『禮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실제 정치와 농사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기록하였다.

조선 학자의 글로는 『栗谷集』·『聖學輯要抄』·『農巖集』·『宋子大全』 내의 글이다. 이는 대체로 '울곡-우암-농암' 학맥의 성격이다. 문집에도 실리지 않은 농암의 편지가 적혀있다는 것은 이들의 학맥, 즉 노론계열의 인물과 긴밀하게 지냈음을 반영한다. 이는 그의 정치 행적에서도 확인된다. 변경봉의 경우 창락찰방에서 물러난 후에 순조5년에 다시 벼슬길로

35) 『一齋文集』(권4). 25~34쪽.

나가는데, 이때는 노론 시과계열이 정권을 잡았던 때와 일치한다.

변경봉은 『탐라기적』을 기록할 때에 춘추의 서술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유교경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변경봉 문집에 등장하는 차기체의 기록 방식은 당시 중요한 지식 습득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 그의 차록을 통해 볼 때, 변경봉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유학이었고, 그 중에서도 성리학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청나라에서 고증학의 성과가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경봉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성리학에 관한 글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변경봉은 성리학적인 글을 두루 차록하고 있지만, 차록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은 변경봉 개인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시 제주도가 성리학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그 깊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동시에 제주도 지배층에 본격적으로 유교사상이 두루 퍼져가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문집 내 흥미로운 글 중에 하나가 「京中小畜金氏顛末」과 「鄉中小畜李氏顛末」이다. 이 두 글은 모두 小畜, 즉 첩에 관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이런 첩 제도가 허용되고 있었기에 변경봉이 첩을 둔다는 것은 그다지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이 사실을 변경봉 자신이 스스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성격의 글은 여타의 다른 문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또한 「京中小畜金氏顛末」은 당시 제주를 떠나 벼슬살이 했던 사람들이 본처는 모두 고향에 두고 혼자 한양에 머물면서 생활했음을 짐작케 한다.

유교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문집내의 무속적 내용이다. 주지하듯 제주도는 신들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무속적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무속적 사회성향에 대해 본토에서 내도하는 목민관들은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꾸려했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집을 보면 19세기까지도 무속적 성격이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己亥渡海錄」의 서두로, 변경봉 자신이 푸다시 받았던 것을 기록한 것이다.

옛날 경인(1770)년에 두 명의 왕손이 대정현에 유배왔다가 塞洞 宋最正의 집에서 병사하였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내가 武廳에서 책을 읽을 때 송최정의 집에서 기거하였다. 삼월 음산한 비가 개지 않은 날 거의 저녁이 되었을 때, 송최정의 집에 식사를 하려 문에 당도하니 籠木 냄새에 코를 막았고, 밥을 먹으려니 불결한 기운에 위가 매스꺼웠다. 이로 인해 밥을 물리고 서실에 돌아왔다. 이리길 무릇 삼 개월이었는데, 주인은 식사하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생각하여 내게 집에 돌아가길 권하였다. 이때는 별로 아픈 곳이 없었지만, 몸이 지치고 어지러웠고 멍하니 깨지 않았다. 억지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누웠다. 이로 인해 누워서 수 개월 음식을 전폐하였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기다렸다. 병의 근원이 어디인지 몰랐고 점점 쇠진하여 숨 쉬는 해골이나 다름이 없었다. 다만 마음과 정신만은 어둡지 않아 약물이나 기원하고 굶는 것과 밤낮의 변화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다.³⁷⁾

변경봉은 1774년 18살의 나이에 도과에 응시했지만,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과장을 나왔다. 그 후 변경봉은 대정향교를 중심으로 공부를 계속했는데, 인용문은 그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인용문에서의 두 명의 왕손은 장헌세자의 서자인 恩彦公(1754~1801)과 恩信公(1755~1771)을 말한다. 은언공은 상인에게 진 빚이 영조에게 알려져 유배되었고, 은신공은 金龜

36) 이런 사항들은 현길언(「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이형상(李衡祥)목사의 신당(神堂) 첩폐에 대한 설화적 인식」)의 글 등에서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다.

37) 「邊景鵬文集」·「己亥渡海錄」: 昔在庚寅, 二王孫謫于大靜縣, 病死于塞洞宋最正家. 過數月後, 余讀書于武廳, 寄食于宋家, 時維三月陰雨未晴, 日幾夕, 將就食于宋家, 當門則籠木之臭, 擁鼻. 對飯則不潔之氣, 反胃, 因推食而反于書室, 如是凡三月矣. 主人怪其廢食, 勸我還家, 時則別無痛處, 肢體委靡, 昏昏不醒, 強作而歸家, 因臥數月飲食全廢, 轉側須人, 雖不知病源在於何處, 而漸漸盡, 無異呼吸之觸體矣. 但心神不昧, 凡藥餌祈禳及晝夜人物, 無不卜知.

柱 일당의 무고로 형인 은언공과 함께 관작이 박탈되어 제주로 유배형에 처해졌다.³⁸⁾ 변경봉은 우연치 않게 이들이 병사한 송최정의 집에 머물며 공부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곳에 머물던 변경봉은 이유 없이 식욕이 떨어지고, 아픈 곳도 없는데,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은 몽롱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변경봉과 주변 사람들이 찾은 것은 의원이 아니라, 바로 巫覡이었다. 이들은 이 상태의 최적의 해결자를 무격으로 본 것이다. 이런 현상이 제주도만의 특별한 인식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³⁹⁾ 이처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시 제주사회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무속신앙이 변경봉 집안과 같은 당시 제주 양반사회에서 행해졌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怪力亂神을 배제했던 유교의 사상과 배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큼은 무속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용문의 뒤를 이어 여러 무격들의 출입에서도 이런 인식이 분명히 나타난다. 변경봉의 상태에 대해 巫覡들은 ‘어떤 귀신의 빌미이다.’, ‘어느 지방의 지진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물건을 맡았기 때문에 생긴 재앙이다.’라고 하며 그 원인을 진단했고, 이에 맞는 굿을 행하였다.⁴⁰⁾ 여기에서는 굿을 하는 원인들이 자연재앙은 물론, 귀신·타인의 물건 등이 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제주도 사람들이 자연재해와 인간 사회의 모든 불안요소를 굿으로 해결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굿을 행했다는 것은 변경봉 주변의 인물들 역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38)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국서관행회, 소화56년. 참조.

39) 예를 들어 『淵泉集』(권30.『先妣貞敬夫人大邱徐氏[洪仁讓妻]墓表』)에서는 어머니가 굿하지 않았음을 특기하고 있다. 또한 야담집에서도 무속에 관한 기록이 전한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이 시기가 분명 유교사회였지만, 무속이 이면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변경봉의 경우처럼 문집에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40) 『邊景鵬文集』·『己亥渡海錄』: 於是巫覡輩, 紛進曰, “此是某鬼之祟” 明日又進曰, “此是某方之動土.” 又明日又進曰, “此是某物留置之孽” 番番祈禳, 毫無有驗矣.

여러 무격들이 변경봉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一靈이라는 무격이 나타나서 이를 풀어가기 시작한다. 一靈은 변경봉이 아픈 원인을 집안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객지에서 얻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에 변경봉의 아버지가 ‘그렇다’고 대답하는데, 이는 이미 一靈이 오기 전에 다른 무격의 굿이 있었기에 확신하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이에 一靈은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식이 갑작스레 객지에서 죽었는데, 서울에서부터 잡귀가 따라왔다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집안을 엿보며 휘파람 불거나 혹 처마에 기대어 웅얼거리다, 마침 도령님이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사지에서 臟腑에 깊이 들어와 음식을 전폐하게 하였으니, 그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밥 세 그릇, 쌀 세 그릇과 정화수 한 그릇을 준비해주시시오. 그러면 제가 굿하여 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이면 평상시 기운을 되찾고 병이 없을 것입니다.”⁴¹⁾라 하고는 굿을 시작한다. 다음은 변경봉이 자신이 직접 겪은 굿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아버님이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비용도 크지 않았고, 초조한 마음이 급하여 그 말에 따라 시행하였다. 그 날 저녁 一靈이 손으로 叢鈴을 흔들고 입으로 地藏菩薩을 초청하는 말을 하였는데, 이루다 기억할 수 없었다. 子夜가 되었을 때,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높였고, 귀신을 내쫓을 때에는 明刀로 사지를 어지럽게 찌르니 털과 머리카락이 모두 곤두섰다. 콩으로 세차게 내리치니 소리가 벼락과 같았다. 一靈이 손으로 위에 덮고 있던 옷을 잡고 휘두르며 달리더니 대문을 나가서는 떠나가 버렸다. 나는 어지럽고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 해가 중천이 되어 밤 생각이 갑자기 생겼고, 정신은 밝고 상쾌했지만, 양쪽 다리에는 힘이 없었다.⁴²⁾

41) 『邊景鵬文集』·「己亥渡海錄」：有一巫男名一靈者，爲人短矮茸鬚，人皆藐而不奇焉。一日忽乞米而來，先公試問病由，一靈投錢占之曰，“此非難之病，前者，雜巫之所爲盡虛誕也。此病殆非得於家中，豈偶遭於客裏者乎？”先公曰然。曰“金枝玉葉，奄忽于客鄉，則自京華，偕來雜鬼，不晝隨返樞而去。或瞰室而嘯，或依簾而嗽，適逢道令主，榮衛不調之時，流注四體，沈入臟腑，全廢飲食，固其然也。今夕願備三盂飯，三器米，一器井華水，卽小人爲防穢逐之。明日則復常無病矣。”

42) 『邊景鵬文集』·「己亥渡海錄」：先公姑不信其言，所費不大，急於焦悶，依其言施之。其夕，一靈者，手搖叢鈴，口招地藏菩薩之說，不可勝紀。及當子夜，曠目高聲，比逐鬼

19세기 조선시대 문집에서 이처럼 굿하는 모습이 한문으로 자세히 기록된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이는 제주도이기에 볼 수 있는 기록인 셈이다. 인용문은 푸다시를 기록했다. 푸다시는 한국 본토의 푸닥거리에 해당되는 巫儀로서 잡귀에 범접된 병을 치료하는 의례인데⁴³⁾ 지금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 잡귀는 死靈의 일종으로 惡靈이 되며, 여기서 왕세자가 죽을 때 서울에서 따라온 잡귀가 된다.

푸다시는 ‘벌풀이-신풀이-잡귀풀이’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인용문에서는 벌풀이와 신풀이의 과정이 요령을 흔들며 地藏菩薩을 초칭했다는 표현으로 압축되어 있다. 변경봉이 지장보살을 거론한 부분은 본인이 이해한 신방의 말명(신방의 사설)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잡귀풀이는 연고가 없는 사자의 잡귀를 쫓아내는 제차이다. 이 제차가 본격적인 푸다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심방은 환자를 제상 앞에 앉혀서 머리 위로부터 몸에 흰 무명을 걸치고 신칼을 들고 환자의 주위를 춤추며 돌면서 협박적인 어조로 쫓아내는 노래를 부른다. 노래가 진행됨에 따라 어조는 점차 고조되고 춤도 점점 난폭해진다. 동시에 신칼로 환자의 육체를 마구 찌르는 동작을 한다. 인용문에서 ‘明刀로 사지를 어지럽게 찢었다’는 부분이 그것이다. 원래 푸다시에서는 ‘벌풀이-신풀이-잡귀풀이’를 세 번 되풀이 하지만, 문집에서는 반복되어 생략하였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콩으로 내리치고 옷을 휘두르며 떠나가는 것은 도진과 끌래기송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로써 푸다시의 의례가 완결되었다. 이런 의례를 통해 변경봉은 다시 예전처럼 식욕이 생기고, 맑은 정신을 갖게 되었다. 즉, 변경봉은 무속절차를 통해 직접적인 효험을 얻은 것이다.

변경봉은 이러한 무속절차를 직접 겪고 효과까지 봤음에도 “무릇 사람의 생사는 하늘에 있지 귀신에게 있지 않다. 비록 신령한 무당이 있다고 해도 귀신이 사람들을 주관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일체 가까이 하

魘, 以明刀亂刺肢體, 則毛髮盡豎. 以大豆猛搗瓢板, 則聲若霹靂. 一靈, 手執上覆之衣, 揮揮逐逐, 出門而去, 余昏困入睡, 朝既盈矣. 思食之念, 遽然而生, 精神明快, 兩豎無根矣.

43)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341쪽.

지 않는 것이 진실로 군자의 도이다.”라고 하며 유교적으로 결론짓는다. 또한 변경봉은 “비록 一靈이 아니었어도 나는 반드시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물며 그 앞 수십 무리가 허망한 것을 한 것에 있어서라? 자손들이 무당에 무속에 억눌릴까 두려워서 특별히 기록하여 경계한다.”⁴⁴⁾ 라고 항변한다.

변경봉의 이런 인식은 유학적 사고로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즉, 이는 유학적 사고로의 변화과정에서 양반으로 살아가려면 필수적이라 할 당시 현실과의 조화, 이성과 감정 사이의 심리적 갈등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속적 행위에 대한 변경봉 부자간의 세대적 인식 차이도 느끼게 한다. 변경봉이 비록 유교적으로 결론지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무속의례는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이 외에도 문집에는 무속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변경봉이 천연두를 걸렀을 때 몽정을 했던 장면이나, 면사장까지 지냈던 그의 아버지가 신위를 설치하고 빌었던 모습에서 신분상으로 양반이었지만, 실질적인 무속행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일재문집』(권4)에는 제주 목사였던 韓象默을 추념하는 제문이 실려 있다. 韓象默은 화북에 海神祠를 지었고, 임기 중에 제주도에서 죽었다. 그가 지은 해신사는 바다에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무속과 유교의 제사가 지금도 혼용되어 나타나는 곳이다. 이곳에 제문을 지었다는 것 역시 제주도내에 무속적 영향력이 컸음을 반영한다.

이런 제반사항을 통해서 볼 때 19세기 초기의 제주 양반사회에는 비록 유교적 성격으로 대표할 수 있다 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강한 무속적 성격이 짙게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당시 제주 양반들은 외부적으로는 유교를 극대화하면서도 내면적 인식에서는 결코 무속적인 것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44) 『邊景鵬文集』·『己亥渡海錄』：凡人物之死生，在天不在鬼，則雖有靈巫，真能使鬼，渠安能司被補於人物也哉？一切不迫，真君子之道也。… 雖非一靈，余必不死也，況其前十數輩之虛妄乎？將恐子孫之接此惑巫，故特書戒之。

제주도에서 무속적인 인식은 19세기 말에 와서야 유교사상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19~20세기를 살았던 김석익은 『心齋集』에서 ‘斯道’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언급한다. ‘사도’는 바로 유교사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김석익은 제주도 내의 여러 신당에 대해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으면서도, 광양당 철계를 특기하는⁴⁵⁾ 것으로 볼 때 당시 제주 지도층의 사상이 유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김석익과 변경봉은 100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유교가 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주사회를 지배해 나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청금안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

조선시대 향촌사회는 중앙권력과 관계를 가지는 관직·생원·진사·문과·유향소·사마소·종족조직 등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권력과 위신을 창출했다. 전통적으로 향촌사회의 구조는 유림의 출입처였던 서원·사우 및 향교의 조직형태나 그 연결방식에 잘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양반 사족이나 신분층을 유지시켜주는 관직이외의 실제적인 조건이었다. 결국 서우·향교는 향촌 지배층들간의 권력 교환처였던 셈이다.⁴⁶⁾

이에 대해서 특히 청금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금안이란 향교에 적을 두고 있는 양반유생의 명단을 말한다. 양반은 향교에 적을 두고 있을 지라도 校生이라 부르지 않고, 청금록유생 또는 유림으로 별칭하였다.⁴⁷⁾

제주도 같은 경우 대대로 벼슬을 했던 집안이 드물었던 만큼,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향촌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향교 출입이 필수적이었다. 즉, 청금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양반임을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주도의 청금안에 대해 심재 김석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45) 『心齋集』2, 312쪽.

46) 정승모, 「서원·사우 및 향교 조직과 지역사회 체계」, 『태동고전연구』3, 1987.

47) 최윤진, 「고창향교 동·서재 유생안에 대한 검토」, 『송준호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87.

제주의 청금안은 그 유래가 오래지만, 중간에 폐해진 이유는 지금 고증할 수 없다. 영조 무오(1738)년에 목사 洪重徵이 선비들을 예우하여 지방 문벌 십여 집안을 선발하여 다시 청금안을 만들어 儒林의 으뜸으로 생각하였다. 그 서문에서 청금안 안의 여러 집안 자손을 거론하며,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를 따지지 않고 대대로 土木의 책임을 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순순히 멈추지 않았고, 引重함이 매우 성대하였다. 내 적이 청금안의 설치가 명분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세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오직 이 이후로 課月講學의 풍습이 폐하여져 들어가지 않았고, 사람을 논하고 문벌을 숭상하는 습속이 나와 구하질 못하였다. 마침내 선왕의 建學造士의 본의가 一敗塗地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그 득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하겠다.⁴⁸⁾

제주도의 청금안이 언제부터 기록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 남아있는 자료에서 효종대와 숙종대 말기까지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⁴⁹⁾ 영조 대에 잠시 없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석익은 청금안이 예전에 있었지만 중간에 폐해졌고, 다시 목사 홍중징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들에게는 균역 및 요역을 면제해주었음을 기록하였다. 또한 김석익은 청금안이 세도에 도움이 된 면도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강학을 하지 않았고, 문벌을 숭상하는 풍조가 생겼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였다. 청금안과 그 운용은 처음에 목사라는 국가적 권위로 유지되었지만, 그 운용은 각 향촌 사회에 맡겨졌고 그 기준은 모두 달랐다. 다음은 『변경봉문집』의 내용이다.

탐라의 뛰어난 집안은 靑衿을 최고로 생각하는데, 제주 목은 건릉 무오

48) 『心齋集』·『破閑錄』 296쪽 : 本州靑衿之設, 其來久矣, 而中廢之由, 今未有攷. 英宗戊午, 牧使洪重徵, 待士以禮, 選有地闕者 幾十家, 復設靑衿生案, 以爲儒林之冠. 其序, 引以案內諸家子孫, 無論智愚, 世世勿責土木之意, 諄諄不已. 引重甚盛. 余竊謂靑衿之設, 未必不由正名分而始不可謂無補於世道也. 惟其自此以後, 課月講學之風, 遂廢不舉, 論人尙闕之習, 出而莫救, 卒使先王建學造士之本意, 至於一敗塗地, 可謂得失不掩矣.

49) 이에 대해서는 오송희 논문(朝鮮後期 濟州鄕校 運營 實態,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2쪽. 참조.

(1738)년에 시작되었고, 양읍(대정·정의)은 건륭 신사(1761)년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삼읍이 靑衿을 선발하는 규정은 애당초 각각 달랐다. 제주읍은 三派가 모두 갖추어지고 모두 양반이어야 靑衿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三派란 성가, 외가, 처가를 말한다. 대정읍은 팔고조가 모두 갖추어진 다음에야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팔고조란 父·祖·曾祖·高祖·五代祖·六代祖와 父外祖와 父外曾祖, 할아버지의 外祖·할머니의 外祖가 성가의 四高祖가 된다. 外祖·外曾祖·外高祖와 外母의 外曾祖·外高父의 外祖·外祖母의 外祖가 외가족 四高祖이며, 또 妻四祖가 있다. 정의현인 경우는 八祖가 구비된 다음에야 청금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八祖란 父四祖와 母四祖이다.⁵⁰⁾

제주도에서 청금안의 운용에 관한 몇몇 글이 있기는 하지만, 청금유생을 뽑는 기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이 글이 처음으로 생각된다. 윗글을 기준으로 각 읍의 청금유생 선발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고을명	계통	각 읍의 청금안 조건			
제주	父系	'父系-母系-妻系'의 기준은 있지만 상세한 내력은 미상.			
	母系				
	妻系				
대정	父系	父·祖·曾祖·高祖·五代祖·六代祖	父外祖	祖父之外祖	祖母之外祖
	母系	外祖·外曾祖·外高祖	外母外曾祖	外高父之外祖	外祖母之外祖
정의	父系	祖之祖	祖之外祖	祖母之祖	祖母之外祖
	母系	外祖之祖	外祖之外祖	外祖母之祖	外祖母之外祖

50) 『邊景鵬文集』·「雜錄」: 『邊景鵬文集』·「雜錄」:

耽羅之甲族, 以靑衿爲最, 而濟州則自乾隆戊午始焉, 兩邑則自乾隆辛巳始焉, 而三邑之選棟靑衿之規, 初各不同, 濟州則三派俱備, 極班然後許入, 三派者, 姓派外派及妻派也, 大靜則八高祖俱備然後許入, 八高祖者, 父·祖·曾祖·高祖·五代祖·六代祖及父外祖·父外曾·祖父之外祖·祖母之外祖, 此姓家之四高祖也, 外祖·外曾祖·外高祖及外母外曾祖·外高父之外祖·外祖母之外祖, 此外家四高祖也, 又加妻四祖焉, 旌義則八祖俱備然後許入, 八祖者, 父四祖母四祖也.

각 읍은 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청금안을 정하였다. 즉, 각 해당 조건의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청금안에 이름이 없다면 당사자는 청금안에서 이름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외가의 차이로 말미암아 전처·후처의 형제가 청금안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청금안에 들어갔다가도 청금안에 없는 집안과 결혼했을 때는 청금안에서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⁵¹⁾ 이렇게 청금안에 있다가 쫓겨날 경우, 면제되었던 구역과 요역을 다시 짊어지게 되니 매우 격렬한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변경봉도 집안의 직접 팔고조도를 작성하기도 했다.⁵²⁾ 청금안의 논쟁에서 변경봉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내 일찍이 적이 의론하였다. “정의현의 八祖는 너무 소략하고, 대정현의 八高祖는 너무 엄격하다. 오직 제주 목의 三派가 거의 가깝지만, 또한 병폐가 있다. 만약 절충하여 고쳐 성가·외가·처가가 각각 높이고 낮추는 규칙을 사용하여 바로 칠대로 한정하고 父外祖를 더하고, 외가는 고조로만 한정하고 母高祖를 더하며, 처가는 증조에 한정하여 妻外祖를 더한다. 이 규정을 벗어난 것은 비록 단점이 있어도 버려두고 거론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청금을 뽑는 큰 범을 삼는다면 世家는 대대로 이어온 연원을 잃지 않을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비록 籍에서 벗어났더라도 선조가 뛰어나거나, 사람들을 지시하는 별열이라면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폐단이 없을 것이다. 사람의 장단점을 논할 때도 위험하거나 편파적인 습속이 없을 것이며, 거의 중도에 맞아 마땅할 것이다. 내가 옛날에 여러 차례 청금을 뽑는 회의에 참석했는데, 끄집어내는 실상을 목도하고 몸소 원망과 성내는 소리를 들었다. 따라서 전말을 간단히 서술하고 말미에 내 의견을 붙인다.⁵³⁾

51) 『邊景鵬文集』·「雜錄：由是前後妻之所生兄弟，於青衿或入或否者，以其外家之差池也。一人之身於青衿先參後黜者 以其妻家之不齊也。」

52) 『一齋文集』(권4), 1쪽.

53) 『邊景鵬文集』·「雜錄：余嘗竊議之曰“旌義之八祖，失於太疎，大靜之八高祖，失於太密，唯濟州三派，可謂庶幾而亦有病焉。若折衷而改之，則姓家外家及妻家，各用降殺之規，則直限七代而加父外祖，外家則但限高祖而加母外祖 妻家則止限曾祖而加妻外祖。過此以往，雖有短處，舍舍而不舉，以是爲選青之大法，則世家者，不失其直源之悠久。新進者，雖籍其外，先之烜赫，揮人閥閱，無過不及之弊。論人長短，無險與跛之習，庶幾次中而合宜也。”余昔屢參選青之會，目睹其摘決之狀，躬受其怨怒之聲，故略

인용문에서 변경봉은 성가·외가·처가를 기준으로 각각 높이고 낮추는 규칙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변경봉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父系		母系		妻系	
七代祖까지	父外祖	高祖까지	母高祖	曾祖까지	妻外祖

변경봉은 위와 같은 규정을 제시하면서 융통성 있는 운영을 제안한다. 이어 변경봉은 자신의 제시한 기준으로 했을 때에 폐단이 적을 것이라고 하면서, 청금회의에서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마무리하였다. 변경봉이 제시했던 기준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청금안의 조건으로 팔고조가 제시되었음에도 그 의미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유교가 아직 뿌리내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동시에 사족들이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분 변화의 한 양상으로도 이해된다.

제주도의 경우 실제로 양반계층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중심에 향교가 있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향교를 중심으로 유생·교생 및 향청 관련직이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향교에 관한 여러 직역들도 함께 나타나는데, 이들은 양반층으로 새로 진입하려는 세력들이 직역 취득을 통해 신분을 상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⁵⁴⁾

5. 결론

지금까지 간략하게 『변경봉문집』을 통해 19세기 제주사회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경봉은 제주도 신도리 출신으로 鳥科에 합격하여 출사

絃顛末尾附已見也.

54) 김동진, 「19세기 제주지역의 신분구조와 직역의 사회적 의미」(『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17쪽.

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쳤던 유교적 입신양명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문집 내에는 유교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글들이 있었다. 그렇다고 유교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진 것도 아니었다. 변경봉은 제주도에 와서 자신이 겪었던 무속적 경험을 여과없이 기록하였다. 이는 당시 제주도의 지배층이 무속에서 유교로 점차 변해가는 한 모습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청금안에 관한 논쟁에서도 이런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청금안은 사대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주의 각 읍은 청금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서로 달랐고, 팔고조의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런 제반사항을 정리해보자면, 19세기 제주 지배층의 성격은 공식적으로는 유교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면적 인식에 있어서는 무속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청금안에 대한 논쟁에서 당시 제주가 유교적 향촌사회가 성립되어 있지만, 아직 완벽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제주도에 유교 사상이 확립된 것이 조선후기라고 보았다. 이 연구는 여기에 제주도 지배층이 표면적으로는 유교적 성격이 내면적으로는 무속적 성격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들 수 있다. 또한 제주 지배층의 이런 이중적 인식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제주도에 대한 문헌연구는 초보단계이다. 이는 문헌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발굴과 연구가 이어져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연구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핵심어: 일재, 변경봉, 탐라빈홍록, 청금안

<참고 문헌>

- 변경봉, 『변경봉문집』, 허남춘 외 역. 보고사, 2010.
- 김석익, 『심재집』, 제주문화사, 1990.
- 심낙수, 『은파산고』, 규장각.
- 정조, 『홍재전서』, 한국문집총간 262~267.
- 『輿地圖書』補遺篇.
- 『조선왕조실록』.
- 『日省錄』.
- 『비변사등록』.
- 『국조문과방목』.
-
- 강창용, 「17·18 세기의 제주향촌 사회구조와 그 성격—제주 향안과 천기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주학회, 1991.
- 고창석, 「근대이전의 교육」,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청, 1999.
- 고창석 외,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17쪽.
- 김봉현, 『제주도유인전』, 국서관행회, 소화56년. 참조.
- 박진철, 「조선 후기 향교의 청금유생(靑衿儒生)과 재지사족(在地土族)의 동향—나주 『靑衿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25, 고려사학회, 2006, 221~225쪽.
- 성봉현, 「고성이씨 『선세외가족보』와 『팔고조도』검토」, 『고문서연구』, 한국고문서학회, 2004.
- 안광호, 「조선후기 구례 오미동(五美洞) 문화류씨(文化柳氏)의 이주와 정착 과정」, 『조선시대사학보』, 조선시대사학회, 2004.
- 오송희, 「朝鮮後期 濟州鄉校 運營 實態」,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2~23쪽.
- 조성윤·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217~218쪽.

현길언,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이형상(李衡祥)목사의 신당(神堂) 칠폐에 대한 설화적 인식」,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Abstract>

The study of 18~19 century of Jeju society in a collection of
Byon Kyong Bung`works

kim sae-mi-o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 of Jeju society by looking at the Anthology of 通政大夫 司憲府 掌令 authored by Byon Kyong Bung. Byon (born in 1754; died in 1824) comes from Shin Do Ri, Dae Jeong County, Jeju. He passed the exam of 島科; and later on went through several official jobs in the government. He held a typical confucian character; accordingly he authored several manuscripts that represent Confucian ideas. Byon fully recorded his experience of Shamanism in Jeju. The Anthology revealed diverse conflicts that involve Chung Geum An, which has not been found in other writings that dealt with Jeju society during his time. This finding has indicated that while the character of the ruling class of Jeju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was dominated by confucian ideology, shamanism was a underlying force in its perception. In addition his opinions about Chung Geum An point that Confucian based country village was formed in Jeju; however was not fully established. This paper confirmed the previous findings that nineteenth century ruling class of Jeju represents Confucian character on the surface; but at the same Shamanism character was coexisted.

• Key Words: Il-jae, Byon Kyong Bung, Tamra Binheungrok, Cheong
geum an

* 이 논문은 2010년 7월 14일 투고되었고, 8월 1일 심사 완료되어 8월 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